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최경석 (남서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정의-철학적, 신학적 입장

1. 철학적 입장에서 정의
2. 신학적 입장에서 정의

III. 참여정의-성서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근거

1. 참여정의에 대한 성서적 근거
2. 참여정의에 대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입장

IV. 노동과 연대성-참여정의의 실현의 기본

1. 성서에서 노동
2. 연대성을 위한 노동

V. 참여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

1. 국가
2. 노동조합
3. 교회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12>

* 이 논문은 201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5년 10월 2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 제44차 정기학술대회 발표한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in terms of Christian Ethics

Choi, Kyung-Seok (Namseoul University)

An ethical norm of justice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discussing justice in the area of economy, the justice in terms of ability and distribution is a significant issue. This study argues the importance of 'justice of participation' which will compromise the two aspects of justices. It is the aim of justice of participation that all the members should participate in a society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likely that the economic participation is one of the significant ways of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work through labor. If a person expelled from the labor market, his/her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would be endangered. The role of state is to provide and protect the rights of voluntary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s of the people who are isolated from the society.

This study argues that justice of participation is based on christian ethic. Therefore,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justice is needed. The justice in the christian is closely associated with love of neighbour. According to bible and the ecumenical movement, to support and love the poor and the isolate is the first thing to do. It is a crucial point of the conception of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at to offer a job to those who are isolated from society, This is because the labour is the basis of life of human. In order to implement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e key concept is the labor.

In the bible, labor is blessing through which man can live. However, labor is also imprecation through which man should live. The labo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s of community and is needed for the solidarity of community. To accomplish the justice of participation,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church and labor union have each mission. In particular, the church should keep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state and labor union.

Key words: Justice of Participation, Labor, Church, The Isolated, Solidarity

I. 들어가는 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문제들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전을 개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규범은 사회적 정의일 것이다. 정의는 인류가 존재하고 사회가 구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규범들 중 하나이다.¹⁾

그러나 정의는 다른 규범들보다 명쾌히 규정되기 어렵다. 한 사회가 어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를 선호하고 옹호한다. 이들은 경제주체들의 능력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이럴 경우, 개인들의 능력 또는 경제주체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기에 이른바 능력에 따른 정의가 선호된다.

반면에 사회의 부유함은 어느 특정한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에 사회의 부유함 형성에 참여한 자들이 그 부유함을 소유하고픈 최소한의 욕구를 발동한다. 그리고 이 욕구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욕구에 따른 정의 다른 말로하면 공정한 분배정의를 선호한다.

만약 정의가 능력에 의한 것으로 제한될 경우, 재화의 소유에 있어서 사회적 운수와 행운이 적은 연유로 출발점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재화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로 정의가 공정한 분배로 축소된다면, 순수한 개인의 능력을 또는 가정의 능력을 통해서 이룩한 복지체계가 위협을 받는다. 아울러 능력 있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 줄어들게 된다.

1)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2010), 47을 참조하라.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길항관계 속에 있는 이 두 정의에 대한 사고들이 각자의 길을 걷는다면 사회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 두 사고들은 그래서 서로 동 떨어질 수 없다.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에서 논의된 정의의 담론들은 이 둘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른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독일 개신교가 발행한 백서 『Gerechte Teilhabe (2006)』도 역시 이른바 참여정의(Teilhabegerechtigkeit)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독일 개신교가 제시한 백서 『Solid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2015)』도 참여정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정의를 강조할 것이다. 우선 독일 개신교에서 발행한 백서가 말하고 있는 참여정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참여정의의 목적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가능한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삶을 위한 기본적인 가능성들로부터, 즉 물질적인 것이나 자율적인 생활방식을 얻는 기회에서 소외될 수 없다.”²⁾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소외될 경우, 그는 사회참여와 정치참여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하여 참여정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에서 삶을 유지하는 가능성들로 참여”³⁾하도록 요구한다.

실제로 지속적인 수입이 줄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경우⁵⁾, 이들은 돈벌이를 목적

2) EKD, *Gerechte Teilhab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43

3) 위의 책.

4)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노동 가능한 인구를 대상으로 실업률은 2015년 7월 현재 3.7%이다. 참고 인터넷 통계청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4&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5) 25-29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3년 5월 현재 6.7%에서 2014년 5월 현재 8.2% 그리고 2015년 5월 현재 9.0%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참고 인터넷 통계청, 자료,

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참여를 제한받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 참여와 정치참여로부터 스스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틀 속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형태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비정규직 종사자들, 여성노동자들, 간접고용자들, 원청-하도급-재하도급 단계의 노동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등이 여기에 속한다.⁶⁾

이들은 경제활동에서는 소외당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은 위험집단들로 판단된다. 이들에게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계속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당하는 현상은 그 사회의 정의의 척도에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참여정의를 주목하면서 참여정의를 성서적이며 신학적 토대, 특히 기독교 윤리적 토대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2장에서 정의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적 정의는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도 제2장에서 언급될 것이다. 제3장은 이른바 제3의 방법인 참여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정의를 성서적 신학적 기반, 특히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적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제4장은 참여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개념인 노동을 성서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정의에서 핵심은 인간이 노동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6&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6) 최경석,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판단기준의 설정: 연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103-106을 참조하라.

으로써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은 참여정의를 실현시킬 기관으로 국가, 노동조합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II. 정의-철학적, 신학적 입장

1. 철학적 입장에서 정의

고전 그리스 철학에서 정의란 개인적인 덕의 규범에 속하지 않고 사회, 정치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된다.⁷⁾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정의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첫째, 공동체 소유에서 분배될 수 있는 재화는 분배되어야 것이며 불평등한 것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iustitia distributiva’ 이른바 분배적 정의다. 둘째, 개인들이 상호간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iustitia commutativa’ 이른바 교환적 정의다. 그리고 마지막, 강요나 강제적 요소에 의해 지배받는 ‘iustitia legales’ 이른바 법적 정의로 구분된다.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구분 중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주목한다면, 교환적 정의는 곧장 능력정의와 연관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인간들의 경제적 욕구에 의해서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다. 시장에는 이미 자유가 내재되어 있다. 시장에서 원료가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분배된다. 또한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선택의 자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합의된 계약들을 맺게 된다.⁹⁾ 이런 의미에서 시장은 자유로운 “교환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7) Frey, C., *Repetitorium der Ethik*,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7), 101.

8) Frey, C., 위의 책, 101-103.

9) Fetzer, J./Grabenstein, A./Müller, E., “*Kirche in der Marktwirtschaft - ein*

곳이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유에 입각한 교환은 “경제행위를 선한 행위”로 인식한다.¹⁰⁾ 교환적 정의의 특징은 경제주체들이 교환함에 있어 동등하고 정당한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나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과 통제에서 탈피하고, 교환자들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상호간의 장점이 발휘된다. 마침내 희소성이 시장에서 극복되면서 시장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행위가 이루어진다.¹¹⁾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한 정의의 유형론 기대어 설명된다면¹²⁾ 이런 입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부의 또는 다른 여타의 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유물은 자신의 자유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규제의 주체인 국가의 행위를 거부한다. 국가는 단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¹³⁾ 이른바 최소국가다.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이익은 그것을 소유한 자의 자유에 따라서 처분될 수 있다. 즉 합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국가는 그 이익을 분배

Unternehmen der besonderen Art. Eine Thesenreihe”, in: dies., *Kirche in der Markgesellschaft*, (Güterslor: Güterslorvertrag, 1999), 203.

10) Herfeld, M., *Die Gerechtigkeit der Markwirtschaft, Eine wirtschaftsethische Analyse der Grundvollzüge moderner Ökonomie*, (Güterslor: Güterslorvertrag, 2001), 468.

11)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n - Herausforschungsfelder*. (Stuttgart: Kohlhammer, 2008), 81.

12) 샌델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언급에 앞서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각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을 계산하는 도덕 과학을 제시한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과 도덕적 가치가 계산될 수 없느냐에 대한 의문 속에서 공리주의의 단점이 발견된다. 샌델, 앞의 책, 58과 66.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을 개선코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쾌락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고급쾌락과 저급쾌락으로 분리했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행복과 쾌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3) 위의 책, 89.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자유로운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배는 평등하든 불평등하든 정당하기 때문이다.¹⁴⁾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 시스템은 자유지상주의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로운 시장을 옹호하는 자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에 거래 당사자들은 이익을 얻고 전체의 공리가 증진될 수 있기에 시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와 권리의 문제가 적용될 때, 시장이 도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의무와 권리는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¹⁵⁾

이와는 다르게 분배적 정의¹⁶⁾의 입장들 중에서 맑스(Karl Marx)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의 실현은 공정한 재화의 분배를 통해서

14) 위의 책, 93.

15) 정의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셉텐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존 롤즈(John Rawls)를 언급한다. 각주에서 간략히 정리한다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의는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칸트가 말하는 정의란 까다롭지만 요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의무동기에 이끌리어 스스로에게 부여한 법칙, 즉 자기법칙주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법칙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행동은 이성이 명령하는 정언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행동준칙을 보편화해야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는 쉽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칸트는 사회계약에 의거한 정의론을 옹호한다. 위의 책, 192. 입법자들은 정언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해서 공정한 법을 결정함으로써 최초의 사회계약은 정당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인 것이다. 롤즈에게 있어 정의는 원초적 평등의 상태에 모인 각 정파의 대표들이 어떤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물음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은 공정한 합의이며 이 계약에 모인 각 정파의 대표들은 이른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의한 계약에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세워진다. 칸트와 롤즈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가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정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뒤에 그 법에 따라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그 규정에 맞는 것이 선이다. 즉 정의가 먼저 확립되어야 그 정의에 적합한 선이 나온다.

16) 이해영, “분배의 정의와 실천 원칙에 관한 논의: 정책 균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3(2008), 72. 각주 9번을 참조하라. 그러나 이 논문은 분배정의에 대한 고전적 견해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만을 기술한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시장경제의 변형들을 넘어선 대안적 모델을 옹호한다. 맑스주의적 입장이 아닌 사람들은 사회적 출발점에 따른 재화활용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운수를 타고 난 사람들은 사회적 재화를 활용하는 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부는 공정하게 분배되어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¹⁷⁾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경제적 불공평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배정책을 통한 국가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¹⁸⁾

이런 입장을 샌델이 말한 정의의 유형론에 입각해서 살펴본다면, 공동체주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의를 목적론에 입각해서 설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게 있어 정의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다.¹⁹⁾ 정의는 목적과 영광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즉 정의는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 정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기에 재화와 다른 모든 것들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재화와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목적이 결정되면 그 목적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포상과 영광, 즉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분배는 공정한 것이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민들은 미덕과 공동선을 배운다. 미덕과 공동선은 한 집단의 습관의 결과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한 집단의 습관에서 파생된 미덕과 공동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선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선은 의무와 권리보다 먼저 있는 것이기에 정의를 따지려면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즉 좋은 삶, 목적에 맞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먼저 최고선이 규정되어야 하고 그 뒤에 선을 행하면 받

17) 샌델, 앞의 책, 231.

18) 이혁배, 『개혁과 통합의 사회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08.

19) 샌델, 앞의 책, 263.

은 포상과 영광이 정의다. 그래서 선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의 경우, 정의는 도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도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는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개인, 즉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²⁰⁾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은 서사의 존재다. 인간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의 일부이며 공동체가 경험한 이야기를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공유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미덕이다. 공동체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개인들, 즉 시민들은 공동체가 같이 깊어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연대의 무다. 그래서 정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해서 미덕을 세우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샌델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²²⁾

2. 신학적 입장에서 정의

구약성서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며, 신약에서 정의는 심판과 용서의 일치다.²³⁾ 신학에서 정의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신학적 정의를 말한 에밀 부룬너(Emil Brunner),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그리고 파울 틸리히(Paul Tillich)의 정의를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은 사랑과 정의가

20) 위의 책, 310.

21) 위의 책, 369.

22) 위의 책, 370.

23) Tillich, P., *Auf der Grenze*, (Stuttgart: 1962), 170.

설령 동등한 위치일지라도 사랑의 우위 또는 사랑 안에 정의가 포함된다 고 보고 있다. 부룬너의 경우 정의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이며, 니버의 경우 정의는 사랑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리고 톨리히의 경우 사랑 안에 정의가 포함된 것이다.

이 세 명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기 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둘은 교회와 국가라는 도식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로 구분해서 정의를 언급한다. 먼저 루터에게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구분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발휘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칼빈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인간의 정의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그리스도 주권에 입각해 있다. 정의는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부룬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정의를 말한다. 정의는 “개인윤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또는 제도의 윤리에도 속하는 것”²⁴⁾이다. 부룬너가 말하는 정의는 동등성(Gleichheit)과 비동등성(Ungleichheit)의 개념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해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동등성의 창조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들은 고유한 기능과 고유한 행동을 가진 하나님의 비동등성에서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창조했다.”²⁵⁾ 사회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동등성에서 존재하고 공동체의 유기적 움직임 속에서 서로 공

24) Brunner, E.,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gese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Zürich: 1943), 24.

25) 위의 책, 47.

존하는 동등성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만든 의도”²⁶⁾에 의해서 창조된 질서 속에는 이처럼 동등성으로 표현되는 정의와 비동등성으로 표현되는 부정의가 서로 내포되어있다. 하지만 부룬너에 따르면, 동등성과 비동등성으로 표현되는 정의보다 상위 규범은 사랑이다.²⁷⁾ 그 대표적인 예는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적합한 의미”²⁸⁾ 속에 존재하는 기구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비동등성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공존한다. 사회 제도는 가정의 확대판으로 보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룬너가 강조한 정의의 목적은 창조 질서 속에서 공동체의 공존이다.

니버의 정의는 인간론적 입장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인간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²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불의를 저지르려는 경향”³⁰⁾을 가지고 있다. 인간 자체가 역설적인 모순적 존재, 즉 죄인이란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윤리적인 완성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윤리적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은 불가능의 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할 때 가능한 윤리가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불가능의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란 역설적 표현이다. 니버의 정의는 완전한 사랑의 근사치적 실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기에 인간의 현실 속에서 그에 근사치적인 정의는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규범인 것이다. 그

26) 위의 책, 53.

27) 위의 책, 173.

28) 위의 책, 171.

29) Niebuhr, R.,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7.

30) 위의 책.

래서 니버에게 있어서 정의는 곧 사랑의 실천이다.

틸리히의 정의는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정의다. 정의와 연관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요소다. 사랑은 정의의 근거요, 힘이요, 목표다. 틸리히가 말하는 궁극적 정의는 창조적 정의다. 창조적 정의란 “사랑과 정의를 재결합하는 것이요 도덕의 궁극적인 원칙”³¹⁾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최상의 원리다. 정의는 사랑 안에 포함된다. 정의 없이 사랑은 있을 수 없다.³²⁾ 사랑 안에 있는 정의는 개인들과 공동체의 공생을 도모한다. 사랑이 무조건적 도덕 원칙이라면 정의는 그 원칙을 실행하는 도덕주의인 것이다.³³⁾

III. 참여정의-성서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근거

1. 참여정의에 대한 성서적 근거

참여에 대한 기독교적 근거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그 뿌리로 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능력을 주며 이 능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린도전서 12: 7)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 그 능력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아프게 된다.(고린도전서 12: 26) 성서의 증언을 윤리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1) Tillich, P., 앞의 책, 170.

32) 틸리히는 “정의 없는 사랑은 척추 없는 몸이다.”라고 말한다. 위의 책, 171.

33) 틸리히는 이를 “사랑의 도덕”과 “정의의 도덕주의”라고 말한다. 위의 책, 170.

개인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윤리적 책임을 가진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과 그들 역사의 출발점은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다.³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법과 정의”라는 규범들은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구약성서의 신명기법은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약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다. 십일조의 수혜 대상은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며(신명기 14: 28-29),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법(신명기 24: 17-22)은 익히 알고 있는 신명기법이다. 게다가 다소 이상적이긴 하지만 7년마다 반복되는 면제년(신명기 15: 12-18)과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법(레위기 22: 8-55)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구약성서의 증언이다.³⁵⁾ 예언자들도 이런 사회 윤리적 경향에 편승한다. 예언자 이사야는 사회 문제는 곧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식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이사야 58: 6)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이사야 58: 7) 이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이사야 58: 9)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구약전승(이사야)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눈 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누가복음 4: 18-21) 게다가 예수의 비유인 세상에 대한 심판의 비유에서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이 예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다.(마태복음 25: 31-46)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예수는 눈 먼 사람들, 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환자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적을 말한다.(마태복음 11: 5) 사도 바울은 예수

34) 박종수, 『구약성서 역사 이야기』, (안양: 글터, 1996), 77

35)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75-278을 참조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세상의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표식으로 말한다.(고린도전서 1: 27-28)

이렇게 볼 때, 정의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이웃사랑의 계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³⁶⁾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다.

2. 참여정의에 대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입장

20세기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은 현재까지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³⁷⁾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로 약칭) 이후 ‘책임사회’ 구상, ‘정의롭고 참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Just, Participatory and Sustainable Society, 이하 JPSS) 그리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이하 JPIC)이 그 세 가지 틀이다.

우선 1948년 “책임사회” 구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³⁸⁾ “책임사회” 구상은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능력에 따른 정의에 가까운 자본주의와 분배정의에 가까운 공산주의를 거부하며 이른바 제3의 방법을 모색한다.³⁹⁾

1968년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반향을 일으킨 남미의 해방신학은 가난

36) 이와 같은 견해로는 Jähnichen, T., "Konziliarer Prozeß" und "entgrenzte Welten", in: Jähnichen, T. (Hg.), *Die Frucht der Gerechtigkeit wird Frieden sein.*,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8), 166.

37) Raiser, K., *Ökumene im Übergang: Der konziliare Prozess ist ein Beispiel für den Paradigmenwechsel*, in: *epd-Dokumentation*, 11.12/1990.

38)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99-102.

39) 위의 책, 104.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 후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책임사회” 구상에 토대를 두고 새로운 틀을 세운다. 1974년 베를린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는 이른바 ‘JPSS’를 구상한다. ‘JPSS’ 구상에서 정의와 참여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⁴⁰⁾ WCC는 정의와 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통합시켜 운용하고자 했으나 생태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⁴¹⁾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여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 필요했다. ‘JPIC’ 구상은 이런 상황에서 구상된다. ‘JPIC’ 구상 속에서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강조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의의 실현이 강조된다.⁴²⁾ 이런 참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하는 생태학적 친화성까지로 확장된다. ‘JPIC’ 구상은 교회가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서 서로 상보적 관계 속에서 이른바 공의회적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JPIC’의 공의회 과정은 자본주의의 지배 속에서 정의, 평화 그리고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기독교적 책임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다.⁴³⁾ ‘JPIC’의 공의회 과정의 핵심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⁴⁴⁾

성서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참여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목한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

40)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5), 168-169.

41) 위의 책, 171.

42) 최경석, “공공신학으로 시민운동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4(2012), 293.

43) Jähnichen, T., 앞의 글, 167.

44) 위의 글.

람들이 대부분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독일 개신교 백서 『Gerechte Teilhabe』는 그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1)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항한 가난의 의미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책임을 갖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선은 모든 구성원들을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목적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상은 시급히 주목을 받는다.
- (2)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온정주의적 선택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가능한 주변인들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 (3)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참여가 부족한 모든 것들과 연관된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은 물질적 참여의 안전보장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개선시키는 활발한 사회복지 국가를 포함한다.”⁴⁵⁾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의의 기본 구조는 분배정의와 능력에 따른 정의를 모두 고려한다. 참여정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과 정치, 사회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IV. 노동과 연대성-참여정의의 실현의 기본

1. 성서에서 노동

성서의 증언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참여정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큰 틀이 세워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45) EKD, 앞의 책, 46-47.

찾거나 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참여정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실존을 위한 물질적 안전장치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Berufung)을 받았으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위해서 활동해야 함을 강조한다.⁴⁶⁾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직업을 가진다.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을 하며, 노동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노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경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은 노동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며 인간이 실존하는 근본이다.⁴⁷⁾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은 하나님이 부여한 축복과 저주이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노동은 축복과 저주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긴장관계 속에 있다.

축복의 관점에서,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의 위임이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책임과(창세기 1: 26) 피조물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위임을 주었다.(창세기 2: 15)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쌓은 그 어떤 성과들(돈, 제도, 문화 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존엄한 인간은 그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⁴⁸⁾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형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노동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도록 창조되었다.⁴⁹⁾ 세상의 형성과정은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46) EKD, *Solid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9.

47)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9

48) 위의 책, 12-13.

49) 위의 책.

인간이 노동의 자유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주의 관점에서, 노동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받게 된 고통 중 하나이다. 삶의 목적으로 노동이 아니라 필연적 의무로서 노동해야 하는 수고와 그 형벌이다. 인간은 평생 수고를 통해서만 소산을 얻을 수 있다.(창세기 3: 17) 이는 인간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은 그 령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저주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위임으로 주신 축복이요 동시에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저주인 것이다.

창세기 2장 15절을 고려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노동함으로써 하나의 동료로서 창조세계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노동은 귀천이 없으며 동시에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지 노동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이른바 노동의 광의적 의미가 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의 개념은 주로 돈벌이를 위한 노동으로 축소된다. 돈벌이 노동이 삶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시킴으로써 이런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이 영위할 삶의 양식의 질을 변형시켜야한다. 오늘날 이런 노동의 이해는 성서의 증언에서 해석된 광의적 노동의 개념에 위협을 주고 있다.

성서는 죄인인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인간의 노동도 한계점을 가진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노동의 한계점이 명확히 기술된다. 하나님은 7일 동안 노동한다고 기록한다. 그 7일 중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휴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휴식은 노동과 배치된 개념이 아니라, 노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다.⁵⁰⁾ 휴식과 노동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교회전통(AD 321)에 따르면 일요일은 휴일이다. 때문에 교회는 휴일과 일요일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오직 노동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노동이 절대화되는

50) 브라켈만 위의 책, 11-12.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의 노동할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아 장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와 사용자들은 성서의 증언인 노동의 한계점, 즉 휴식이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성서의 십계명 특히 안식일법은 노동의 절대화에 대해서 강력적으로 거부한다.⁵¹⁾ 안식일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종들에게, 가축들에게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휴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잠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노동의 절대성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2. 연대성을 위한 노동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두 번째 창조기사에서 그 근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창세기 2: 18) 인간의 삶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하다.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노동함으로써 유지된다. 산업화 이전에 중요한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었다. 산업화 이후 공동체는 노동을 통해 형성된 노동사회로 확장된다.

경제행위는 노동사회의 구성원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형성은 노동사회의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도 노동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과 소비자의 소비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본가의 자본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하면 시장에서 자유가 형

51)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신명기 5: 13-14)

성되도록 치안과 국방을 제공해야하고,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자들에 의하면 국가는 공정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규제와 계획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듯 경제행위는 노동사회의 구성원들과 연대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노동은 “연대성의 행위”⁵²⁾인 것이다.

연대성은 사회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며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 질병, 사고, 실업 등의 원치 않는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한 개인들은 연대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많다. 구약 성서의 약자 보호법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럽에서 중세 후기부터 연대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길드 조직이나 빈민구제 시스템들이다. 이는 산업사회 이후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형태로 발전된다. 노동운동을 통한 연대성은 노동조합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임금인상과 노동시간의 단축 등의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동조합은 이바지한다.

V. 참여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

1. 국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적 능력과 국가의 지원에서 가능하다. 국가가 그의 구성원들이 사회과정에 참여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의 기본 조건은 경제성장이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있어야 국민들에게 재정정책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 성장, 차후

52) EKD, *Solid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앞의 책, 22.

분배의 원칙은 수용될 수 없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만 우선시 되어 복지 수준이 최소한의 사회복지 또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³⁾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존엄성과 생존이 기본 근거가 되어 보편적 복지, 최대한의 복지, 전면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복지국가 시스템이 확충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참여정 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국가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노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다. 실업, 즉 자의적인 실업이 아니라 해고된 실업은 경제적인 소외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의 결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기업의 사용자는 경제시장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노동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의 방향을 설정할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업자들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고 참여를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중요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책임 속에서 사업장을 운영한다. 반면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개선시키고 상승시킬 연합체로 인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회구조의 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공공의 가치를 개선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⁵⁴⁾ 그

53) 강원돈,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23(2012), 41.

54) 이와 같은 견해로, EKD, *Soli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러나 대부분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는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협력내지는 연대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상호 파트너십에 입각한 공정한 과정에서 협정된 규칙들에 의거해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한다.⁵⁵⁾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 사회의 공공이익을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고 공공의 가치들을 상승시키는 일에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⁵⁶⁾ 서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예로 언급될 수 있다.

3. 교회

기독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의 중심 규범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다. 인간의 책임은 구원에 응답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뒤 따르는 것이다. 사랑을 뒤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사를 준다. 구원 선포와 사랑의 실천은 구별되어야 하지만 갈라질 수 없다.⁵⁷⁾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봉사이며 이 세상에 지는 책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존속하고 돌보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임무는 교회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적 조치들 또는 사회적 조치들이 인간에게 부합되는지를 감시하는 직무와 상응한다.⁵⁸⁾ 이런

앞의 책, 132.

55) 위의 책, 133.

56) 위의 책.

57) Brakelmann, 앞의 책, 88.

58) 위의 책, 89.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이 경시당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⁵⁹⁾

교회는 사랑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며 타자를 위해 다가선다.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연대를 목표로, 더 나아가서는 공공이익의 창출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소외된 노동자에 관심을 가진다. 둘의 공통점은 소외된 사람들인 셈이다. 교회와 노동조합은 사람들에게,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을 공동체로 통합시키려는 노력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 개별 교회와 개별 노동조합 각각은 자신의 이해관계 추구를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대가 필요하다.

교회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지역공동체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직업윤리를 심어주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런 윤리적 사고에서 사용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교회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을 발휘해서 노동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교회는 보다 공정하고 연대할 수 있는 노동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정의의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교회의 책임일 것이다.⁶⁰⁾

VI. 나가는 말

능력에 따른 정의와 분배정의의 사이에서 신학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59) 위의 책.

60) 이와 같은 견해로, EKD, *Soli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앞의 책, 140-142.

정의의 이론은 이른바 제3의 길로 표현되는 참여정의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 밝혀졌다. 성서의 증언과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고려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였다. 참여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참여다. 경제적으로 참여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의 개념을 다시금 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참여정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다.

그럼에도 참여정의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참여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모델로 사회복지국가 제도가 언급될 수 있다. 교회는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를 확고히 하도록 압력단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노동조합과 협력적 동반자가 되어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⁶¹⁾ 교회는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확장된 봉사의 개념이 공공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사회에서 실현시킬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고, 개인의 후생복지가 사회의 후생복지와 연결되는 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모델들은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논문은 참여정의의 신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61) 이와 같은 견해로, 위의 책, 23.

참고문헌

-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과주: 한울 아카데미, 2005)
- 강원돈,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23(2012), 7-52.
- 박종수, 『구약성서 역사 이야기』, (안양: 글터, 1996)
- 롤즈, 존,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샌델, 마이클, 『정의란 무엇인가?』, (과주: 김영사, 2010)
- 이샤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59-288.
- 이해영, “분배의 정의와 실천 원칙에 관한 논의: 정책 균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3(2008), 63-92.
- 이혁배, 『개혁과 통합의 사회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최경석, “공공신학으로 시민운동읽기,” 『기독교사회윤리』 24(2012), 273-302.
-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eiträge zu einer christlichen Arbeitsethik*, (Bochum: 1988)
- Brunner, E.,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gese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Zürich: 1943)
- EK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EKD, *Soliarität und Selbstbestimmung in Wandel der Arbeitswe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Fetzer, J./Grabenstein, A./Müller, E., *Kirche in der Marktwirtschaft - ein Unternehmen der besonderen Art. Eine Thesenreihe, in: dies., Kirche in der Markgesellschaft*, (Gütersloh: Güterslorvertrag, 1999)
- Frey, C., *Repetitorium der Ethik*,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7)
- Herfeld, M., *Die Gerechtigkeit der Marktwirtschaft, Eine wirtschaftsethische Analyse der Grundvollzüge moderner Ökonomie*, (Gütersloh: Güterslorvertrag, 2001),
- Jähnichen, T., “Konziliarer Prozeß” und “entgrenzte Welten”, in: Jähnichen,

- T.(Hg.), *Die Frucht der Gerechtigkeit wird Frieden sein.*, (Waltrop: Verlag Hartmut Spenner, 1998)
-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n - Herausnungsfelder.* (Stuttgart: Kohlhammer, 2008)
- Niebuhr, R., *Die Kinder des Lichts und die Kinder der Finsternis, Eine Rechtfertigung der Demokratie und eine Kritik ihrer herkömmlichen Verteilung.* (München: 1947)
- Raiser, K., *Ökumene im Übergang: Der konziliare Prozess ist ein Beispiel für den Paradigmenwechsel*, in: *epd-Dokumentation*, 11.12/1990.
- Tillich, P., *Auf der Grenze*, (Stuttgart: 1962)
-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정의라는 윤리적 규범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에서 정의를 논하려 할 때, 능력에 따른 정의와 공정한 분배정의를 주목된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정의를 절충할 이른바 참여정의를 강조한다. 참여정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경제적 참여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을 통한 경제적 참여는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소외될 경우, 그는 사회참여와 정치참여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의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관은 국가이다.

본 논문은 참여정의를 성서적이며 신학적 토대에서 기인한 것을 밝힌다. 그러기에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요구된다. 정의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서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참여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고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참여정의를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실존을 위한 물질적 안전장치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여정의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개념은 노동이다.

성서에서의 노동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위임으로 주신 축복이요 동시에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저주인 것이다. 노동은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연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교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은 참여정의를 실현을 위한 각각의 임무를 가진다. 특히 교회는 국가와 노동조합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주제어: 참여정의, 노동, 교회, 사회적 약자, 연대성
